

가

Appraisal Report

	24072502
	(3 1) (2024 31940)

(가 , 가 (改作), 가 (轉載))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정평가 대상 물건

가. 대상 토지 개요

			(㎡)				가 (/㎡)	
2	298-1		159				64,600	-
3	415		3,269				34,600	-
4	659-3		292				48,900	-
5	800-1		2,509				34,200	-
6	281-3		72,165				1,350	-
7	344		12,397				1,180	-
8	836		195				30,400	-
9	843		387				26,500	-

나. 대상 건물 개요 [면적 : 일반건축물대장 기준]

				(㎡)				
1	298-5			33.01	/	- 1	2016.12.3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8월 22일임.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4.08.12. ~ 2024.08.22에 수행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조사·확인하였음.

6.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가」 5 1 가 가 .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

7. 기타 참고사항

- 2,3,4) 가 가 .
- 2) 가 “ 가 ” .
- 2)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9) 가 . 가
- 4) .
- 6,7) 가 . 가 .
- 6) .
- 6) () .
- 6) 가 .
- 7) 가 .
- 6) (,) .
가 , , ,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가.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7조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평가 가능함.
제11조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함.
제12조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시산가액 조정을 통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나. 세부 감정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 내용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7 1 가 .

「 」 14 1 가 가

, 「 」 12 () 가 가

「 」 15 가 , 「 」 12 2 가

가 가

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개요

가 가 (" ") 가
가 가 (" ")
가 , ,
(補正) 가 가 .

$$\begin{array}{ccccccc} \text{가} & \times & \times & \times & \times & = & \text{가 가} \\ (/ \text{m}^2) & & & & & & (/ \text{m}^2) \end{array}$$

나. 비교표준지 선정

「 가 」 14 2
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024.01.01]

			(㎡)					가 (/㎡)	
A	866-1		691			()		59,800	-
B	421		4,268			()		36,100	-
C	781-6		1,871			(가)		34,600	-
D	297		1,157			()		1,500	-
E	159-2		19,488					913	-
F	795-1		537			(가)		53,700	-
G	838-2		1,728			(가)		28,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			
A, B	(2024.01.01 ~ 2024.08.22)		0.558% (1.00558)	2024.01.01 2024.06.30 : 0.416 2024.06.01 2024.06.30 : 0.080 $(1 + 0.00416) * (1 + 0.00080 * 53/30) * 1.00558$
C, E	(2024.01.01 ~ 2024.08.22)		0.025% (1.00025)	2024.01.01 2024.06.30 : 0.021 2024.06.01 2024.06.30 : 0.002 $(1 + 0.00021) * (1 + 0.00002 * 53/30) * 1.00025$
D	(2024.01.01 ~ 2024.08.22)		0.458% (1.00458)	2024.01.01 2024.06.30 : 0.306 2024.06.01 2024.06.30 : 0.086 $(1 + 0.00306) * (1 + 0.00086 * 53/30) * 1.00458$
F, G	(2024.01.01 ~ 2024.08.22)		0.774% (1.00774)	2024.01.01 2024.06.30 : 0.552 2024.06.01 2024.06.30 : 0.125 $(1 + 0.00552) * (1 + 0.00125 * 53/30) * 1.00774$

가 가 가 가

라. 지역요인 비교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일련번호 2 / 표준지 기호 A]

가	가 ,			0.98	가 .
	가	가		1.00	.
		, , , ,			
		,			
		, , ,		1.00	.
		가			
		, 가 ,			
	, ,			0.90	.
	,				
		2			
		3			
		, ,		0.73	.
		()			
				1.00	.
				0.64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3 / 표준지 기호 B]

			1.00		.
		,			
	,	,	1.00		.
	,		0.70		.
		,	1.00		.
			1.00		.
			0.7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4 / 표준지 기호 A]

가	가 ,		0.80	가 .
	가	가	1.00	.
		, , , ,	1.00	.
		,		
		, , ,		
		가		
		, 가 ,		
	, ,		0.66	.
	,			
		2		
		3		
		, ,	0.73	.
		()		
			1.00	.
			0.38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5 / 표준지 기호 C]

			1.00		.
		,			
	,	,	1.00		.
	,		0.95		.
		,	1.00		.
			1.00		.
			0.9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6(보전관리) / 표준지 기호 M]

			1.15		
		,			
		,	0.60		
	,				
			1.00		
			1.00		
			0.69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6(농림지역) / 표준지 기호 E]

			1.20		
			0.85		
			1.00		
			1.00		
			1.02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7 / 표준지 기호 E]

			1.00		
		,			
		,	1.00		
	,	,			
			1.00		
		,			
			1.00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8 / 표준지 기호 F]

가	가 ,		1.00	.
	가	가	1.00	.
		, , , ,	1.00	.
		,	1.00	.
		, , ,	1.00	.
		가	1.00	.
		, 가 ,	1.00	.
	, ,		0.90	.
	,		0.90	.
			0.90	.
		2	1.00	.
		3	1.00	.
		, ,	1.00	.
		()	1.00	.
			1.00	.
			1.00	.
			0.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9 / 표준지 기호 G]

			0.98		
			1.00		
			0.90		
			1.00		
			1.00		
			0.88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 14 (가) 2 5 ((30241-36538, 1991.12.28.), (1998.07.10. 98 6067, 1993.09.10. 92 16300) , 가 가 .

$$= \frac{\text{가} \times \times \times}{\text{가} \times}$$

1) 가격조사자료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 m², , /m³)

							가	가 가
1	82* - **		139 -		()	2021.09.27 -	12,000,000	86,000 36,900
2	71* - *		650 -			2023.07.28 -	40,000,000	62,000 36,200
3	67* - *		439 -		(가)	2024.04.08 -	31,600,000	72,000 32,500
4	29* - *		2,314 -		()	2020.09.10 -	35,000,000	15,000 -
5	70* - **		3,306 -			2021.05.25 -	20,000,000	6,100 1,500
6	77* - *		1,036 -		(가)	2021.05.04 -	90,000,000	87,000 32,800

: .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		가		가 (/㎡)	가 (/㎡)
1	42* - *		6,660		()	2024.04.22	55,000	28,000
2	70*		5,008			2019.06.04	58,000	30,300
3	* - *		3,306			2021.07.07	9,300	1,450
4	7*		1,289			2020.03.02	4,600	1,140
5	59*		1,983			2020.07.28	74,000	24,200

: 가 가 .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가격

		가 (/㎡)					가 (, /㎡)
A	1	55,000	1.00335	1.000	1.000	2.415	133,269
	(2024.04.22~2024.08.22) 가 .						
	.						
	.						
	가 , , .						
	가						
	1.05	1.00	1.00	2.00	1.15	1.00	2.415

		가 (/㎡)					가 (, /㎡)
B	1	55,000	1.00335	1.000	1.000	1.103	60,868
	(2024.04.22~2024.08.22) 가 .						
	.						
	.						
	,						
	가						
	—	1.05	1.00	1.05	1.00	1.00	1.1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m ²)					가 (, /m ²)
C	2	58,000	1.07566	1.000	1.000	1.210	75,489
	(2019.06.04~2024.08.22) 가 .						
	.						
	.						
	가						
	—	1.10	1.00	1.10	1.00	1.00	1.210

		가 (/m ²)					가 (, /m ²)
D	3	9,300	1.03177	1.000	1.000	0.900	8,635
	(2021.07.07~2024.08.22) 가 .						
	.						
	.						
	가						
	—	1.00	0.90	—	1.00	1.00	0.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m ²)					가 (, /m ²)
E	4	4,600	1.05792	1.000	1.000	0.800	3,893
	(2020.03.02~2024.08.22) 가 .						
	.						
	.						
	가						
	—	1.00	0.80	—	1.00	1.00	0.800

		가 (/m ²)					가 (, /m ²)
F	5	74,000	1.06383	1.000	1.000	1.389	109,346
	(2020.07.28~2024.08.22) 가 .						
	.						
	.						
	가 , , .						
	가						
	1.15	1.00	1.00	1.05	1.15	1.00	1.38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가 (/㎡)					가 (, /㎡)
G	5	74,000	1.06383	1.000	1.000	1.150	90,531
	(2020.07.28~2024.08.22) 가 .						
	.						
	.						
	가						
	—	1.15	1.00	1.00	1.00	1.00	1.150

다)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가격

	2024.01.01 가		가 (, /㎡)
A	59,800	1.00558	60,133
B	36,100	1.00558	36,301
C	34,600	1.00025	34,608
D	1,500	1.00458	1,506
E	913	1.00025	913
F	53,700	1.00774	54,115
G	28,200	1.00774	28,41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격 격차율 산정

		가 ()	가 ()	가 (= /)
A	1	133,269	60,133	2.216
B	1	60,868	36,301	1.677
C	2	75,489	34,608	2.181
D	3	8,635	1,506	5.734
E	4	3,893	913	4.264
F	5	109,346	54,115	2.021
G	5	90,531	28,418	3.18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A	가 가 가 , 가 가 가 .	2.21
B	가 가 가 , 가 가 가 .	1.67
C	가 가 가 , 가 가 가 .	2.18
D	가 가 가 , 가 가 가 .	5.73
E	가 가 가 , 가 가 가 .	4.26
F	가 가 가 , 가 가 가 .	2.02
G	가 가 가 , 가 가 가 .	3.1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사.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가 (/㎡)					가 (/㎡)	가 (/㎡)
2	59,800	1.00558	1.000	0.644	2.21	85,584	86,000
3	36,100	1.00558	1.000	0.700	1.67	42,436	42,000
4	59,800	1.00558	1.000	0.385	2.21	51,164	51,000
5	34,600	1.00025	1.000	0.950	2.18	71,674	72,000
6	1,500	1.00458	1.000	0.690	5.73	5,957	5,800
	913	1.00025	1.000	1.020	4.26	3,968	
7	913	1.00025	1.000	1.000	4.26	3,890	3,900
8	53,700	1.00774	1.000	0.900	2.02	98,382	98,000
9	28,200	1.00774	1.000	0.882	3.18	79,706	80,000

6) 가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아.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	(㎡)	가 ()	
2	86,000	159	13,674,000	-
3	42,000	3,269	137,298,000	-
4	51,000	146	7,446,000	-
5	72,000	627.25	45,162,000	-
6	5,800	36,082.5	209,278,500	-
7	3,900	6,198.5	24,174,150	-
8	98,000	97.5	9,555,000	-
9	80,000	193.5	15,480,000	-
	-	46,773.25	462,067,6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가. 개요

가
(事情補正), , 가
가 가 .

$$\text{가} \times \times \times \times = \text{가 가} \text{ (/㎡)}$$

나.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
1,2,3,4,5,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m², , /m²)

							가	가 가
1	82* - **		139 -		()	2021.09.27 -	12,000,000	86,000 36,900
2	71* - *		650 -			2023.07.28 -	40,000,000	62,000 36,200
3	67* - *		439 -		(가)	2024.04.08 -	31,600,000	72,000 32,500
4	29* - *		2,314 -		()	2020.09.10 -	35,000,000	15,000 -
5	70* - **		3,306 -			2021.05.25 -	20,000,000	6,100 1,500
6	77* - *		1,036 -		(가)	2021.05.04 -	90,000,000	87,000 32,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토지단가 산출 및 결정

1) 사정보정

	가	가	
가	.		
	1.000		

2) 시점수정

		가 (%)		
1	2021.09.27 ~ 2024.08.22	2.691	1.02691	, ,
2	2023.07.28 ~ 2024.08.22	0.704	1.00704	, ,
3	2024.04.08 ~ 2024.08.22	0.036	1.00036	, ,
4	2020.09.10 ~ 2024.08.22	5.291	1.05291	, ,
5	2021.05.25 ~ 2024.08.22	3.138	1.03138	, ,
6	2021.05.04 ~ 2024.08.22	4.383	1.04383	, ,

3) 일반요인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지역요인 비교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일련번호 2 / 사례 기호 1]

가	가 ,			0.90	가 .
	가	가		1.00	.
		, , , ,			
		,			
		, , ,		1.00	.
		가			
		, 가 ,			
	, ,			0.95	.
	,				
		2			
		3			
		, ,		1.15	.
		()			
				1.00	.
				0.98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3 / 사례 기호 2]

			1.10		.
		,	1.00		.
		,	0.65		.
		,	1.00		.
			1.00		.
			0.71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4 / 사례 기호 1]

가	가 ,		0.80	가 .
	가	가	1.00	.
		, , , ,		
		,		
		, , ,	1.00	.
		가		
		, 가 ,		
	, ,		0.65	.
	,			
		2		
		3		
		, ,	1.15	.
		()		
			1.00	.
			0.59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5 / 사례 기호 3]

			1.00		.
		,			
	,	,	1.00		.
	,		1.00		.
		,	1.00		.
			1.00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6(보전관리) / 사례 기호 4]

			1.00	.
		,		
		,	0.40	.
		,	1.00	.
			1.00	.
			0.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6(농림지역) / 사례 기호 5]

			1.05		
			0.65		
			1.00		
			1.00		
			0.68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7 / 사례 기호 5]

			0.88		
			0.75		
			1.00		
			1.00		
			0.6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8 / 사례 기호 6]

가	가 ,		1.00	.
	가	가	1.00	.
		, , , ,	1.00	.
		,	1.00	.
		, , ,	1.00	.
		가	1.00	.
		, 가 ,	1.00	.
	, ,		1.00	.
	,		1.00	.
			1.00	.
		2	1.15	.
		3	1.00	.
		, ,	1.15	.
		()	1.00	.
			1.00	.
			1.1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일련번호 9 / 사례 기호 6]

			1.00		.
		,			
	,	,	1.00		.
	,		0.95		.
		,	1.00		.
			1.00		.
			0.9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토지단가 결정

		가 (/㎡)					가 (/㎡)	가 (/㎡)
2	1	86,000	1.000	1.02691	1.000	0.983	86,812	87,000
3	2	62,000	1.000	1.00704	1.000	0.715	44,642	45,000
4	1	86,000	1.000	1.02691	1.000	0.598	52,811	53,000
5	3	72,000	1.000	1.00036	1.000	1.000	72,025	72,000
6	4	15,000	1.000	1.05291	1.000	0.400	6,317	6,100
	5	6,100	1.000	1.03138	1.000	0.683	4,297	
7	5	6,100	1.000	1.03138	1.000	0.660	4,152	4,200
8	6	87,000	1.000	1.04383	1.000	1.150	104,435	104,000
9	6	87,000	1.000	1.04383	1.000	0.950	86,272	86,000

6) 가 가
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

	가 (/㎡)	(㎡)	가 ()	
2	87,000	159	13,833,000	-
3	45,000	3,269	147,105,000	-
4	53,000	146	7,738,000	-
5	72,000	627.25	45,162,000	-
6	6,100	36,082.5	220,103,250	-
7	4,200	6,198.5	26,033,700	-
8	104,000	97.5	10,140,000	-
9	86,000	193.5	16,641,000	-
	-	46,773.25	486,755,9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산가액 조정 관련사항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출된 토지 시산가액(試算價額)

	가	가 ()	가 ()
2		13,674,000	13,833,000
3		137,298,000	147,105,000
4		7,446,000	7,738,000
5		45,162,000	45,162,000
6		209,278,500	220,103,250
7		24,174,150	26,033,700
8		9,555,000	10,140,000
9		15,480,000	16,641,000
		462,067,650	486,755,950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가 가 「 가 」 14 1
 가 가 「 」 12
 2 가 「 」
 12 1 가 가 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재조달원가 산정 및 경제적 내용연수 결정

가. 표준단가 검토

				가(/㎡)	
05-06-06-10		/ / /5.5m	3	1,063,000	35 (30 40)

: , 2023 가

나. 부대설비 보정단가 검토

		가(/㎡)
		가
	-	
	-	

: , 2023 가

다. 재조달원가 및 내용연수 결정

가 , , ,
가 .

				가 (/㎡)
1	1		40	1,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건물단가 산출 및 결정

			가 (/㎡)				가	가 (/㎡)
1	1		1,000,000	40	7	7	33/40	825,000

가 : / ()

3. 건물 감정평가액

		가 (/㎡)	(㎡)	가 ()	
1	1	825,000	33.01	27,233,250	-
		-	-	27,233,2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

	가 ()	
	462,067,650	-
	27,233,250	-
	2,430,000	
	491,730,900	-

2. 결정의견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2024-08-22]

					(㎡)		가		
							가		
1		298-5		1					
	()			1	33.01	33.01	825,000	27,233,250	1,000,000 x 33/40
ㄱ		298-5			(27.0)	27.0	90,000	2,430,000	
				1					
2		298-1			159	159	86,000	13,674,000	가 77,000 /㎡
3		415			3,269	3,269	42,000	137,298,000	
4		659-3			292x- 2	146	51,000	7,446,000	
5		800-1			2,509x-	627.25	72,000	45,162,000	
6		281-3			72,165x-	36,082.5	5,800	209,278,500	:
7		344			12,397x-	6,198.5	3,900	24,174,150	

가

[: 2024-08-22]

					(㎡)		가		
							가		
8		836			195x- 2	1 97.5	98,000	9,555,000	
9		843			387x- 2	1 193.5	80,000	15,480,000	
							₩ 491,730,900.		

가

1.	4.	7.
2.	5.	8.
3.	6.	()

1. 위치 및 주위환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소재 '하포항' 남동측, 남서측, 북동측 인근, 남안동 서측 인근, 봉평면 덕거리 소재 "덕거2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전, 임야 등이 주로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2,4,7)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다소 불편함.
일련번호3,5,6,8,9)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 등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상태임.
일련번호4)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통신관련시설 등이 소재하는 잡종지임.
일련번호5)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7)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 등임.
일련번호8,9)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4,7)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8,9) 남서측으로 노폭 약2~3m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5) 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6) 남측 일부면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일련번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일련번호4)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일련번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일련번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일련번호7)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임.

가

- | | | |
|----|----|------------------------|
| 1. | 4. | 7. |
| 2. | 5. | 8. |
| 3. | 6. | () |

일련번호8,9)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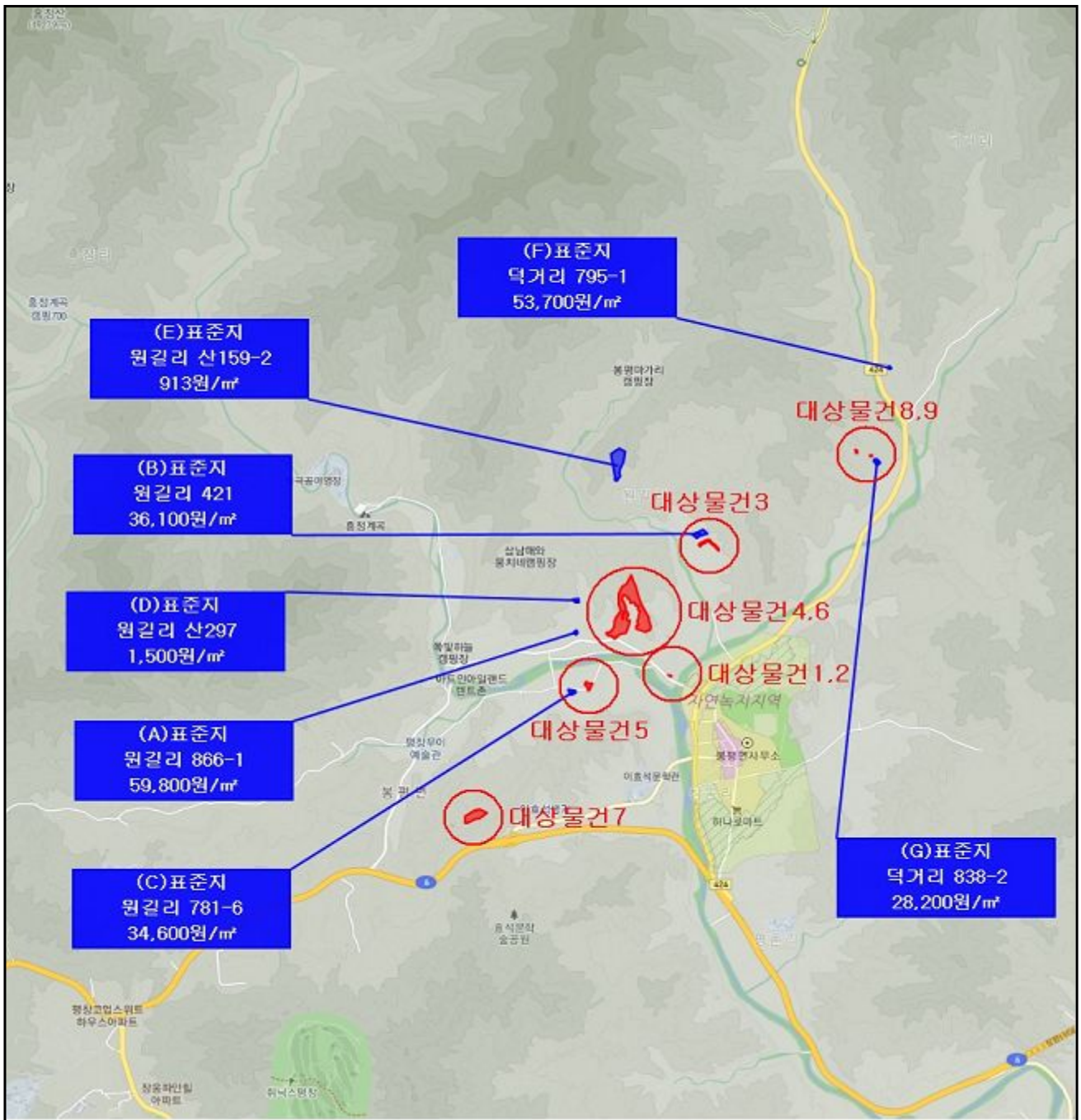
가

1.	3.	5.
2.	4.	6. ()

- 1. **건물의 구조**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 으로서
내·외벽 : 판넬마감.
- 2. **이용상태**
저온창고임.
- 3. **설비내역**
냉장설비 되어있음.
- 4. **부합물 및 중물**
별첨 「사진용지」 참조.
- 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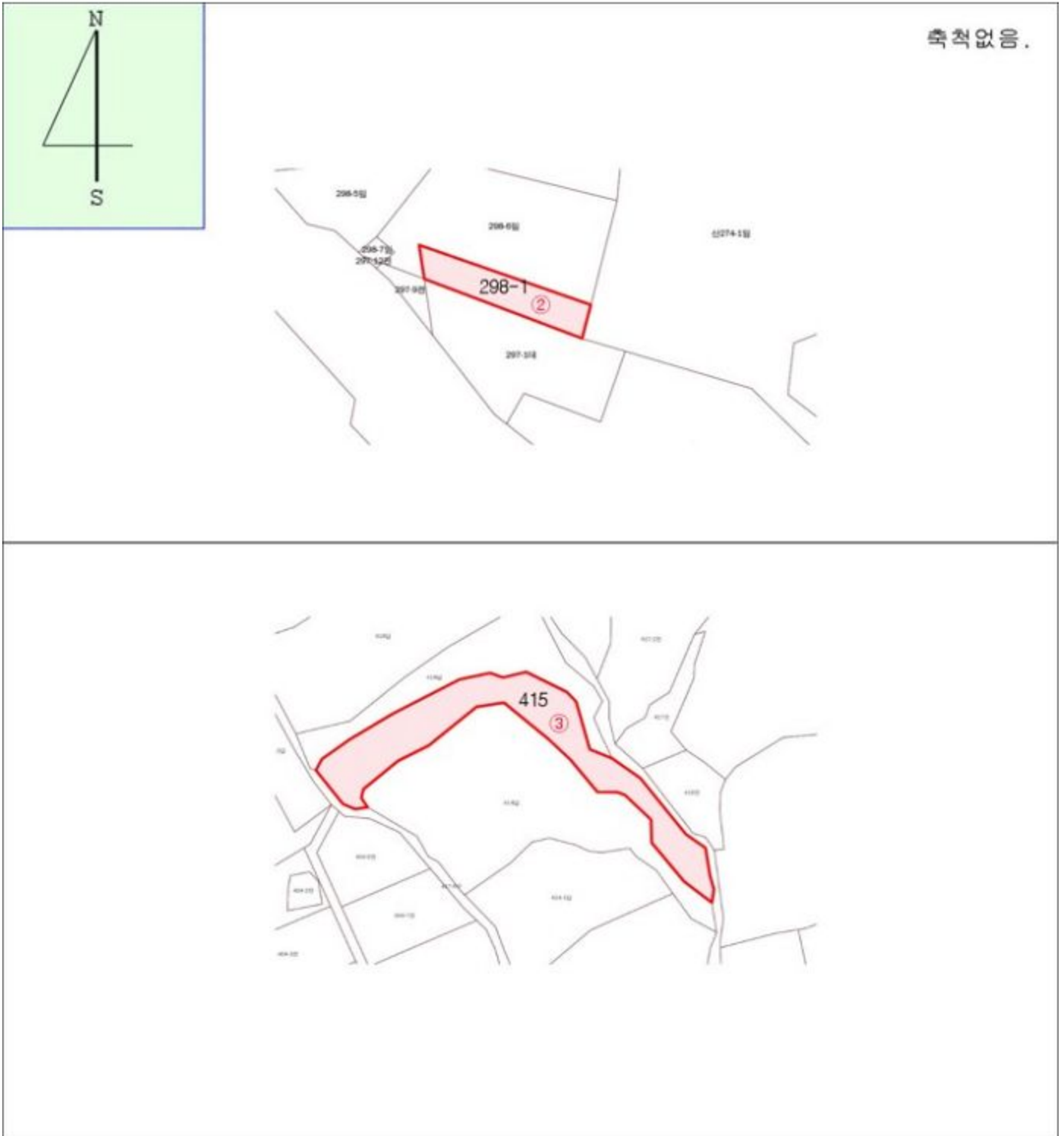
2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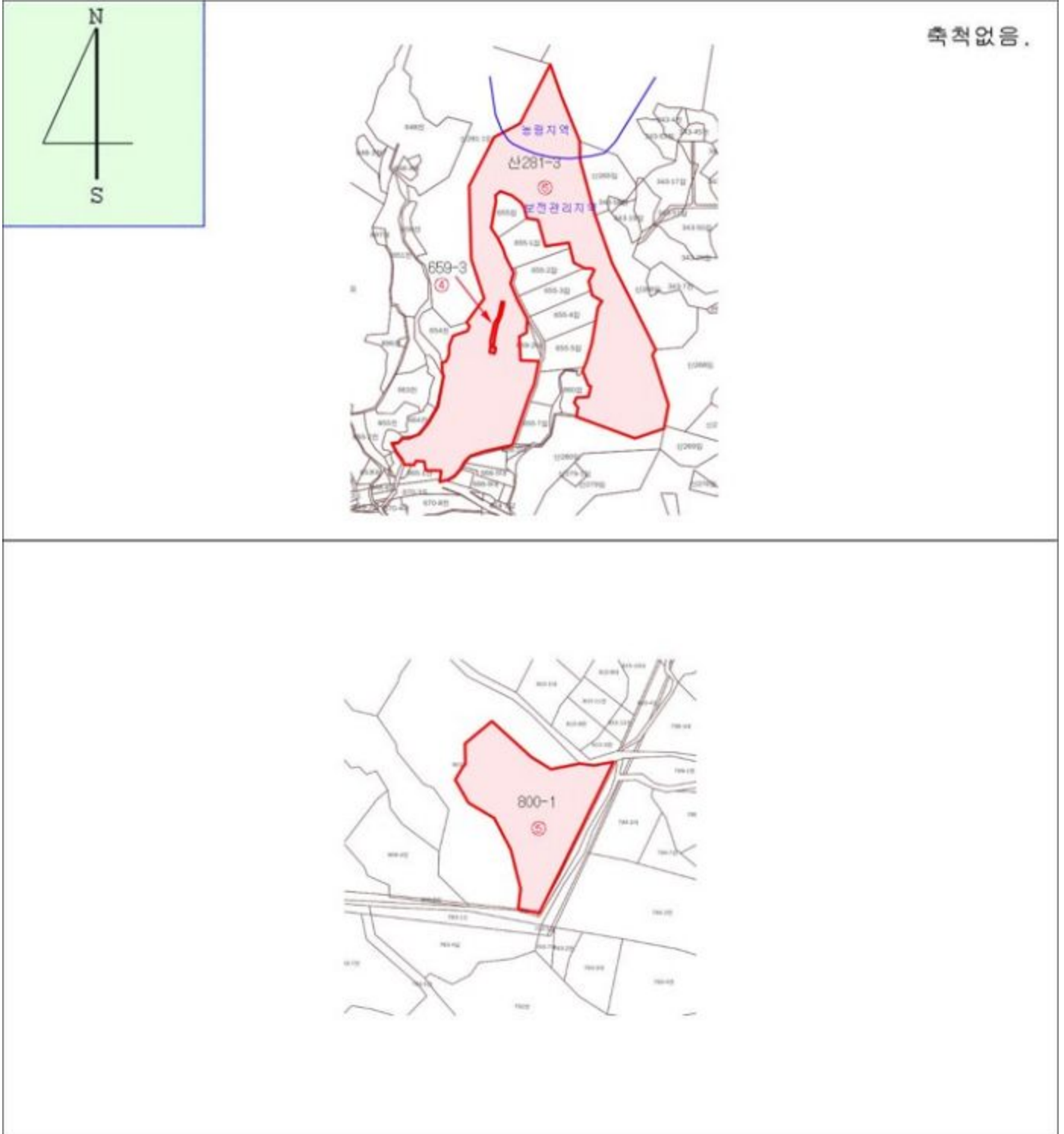
측정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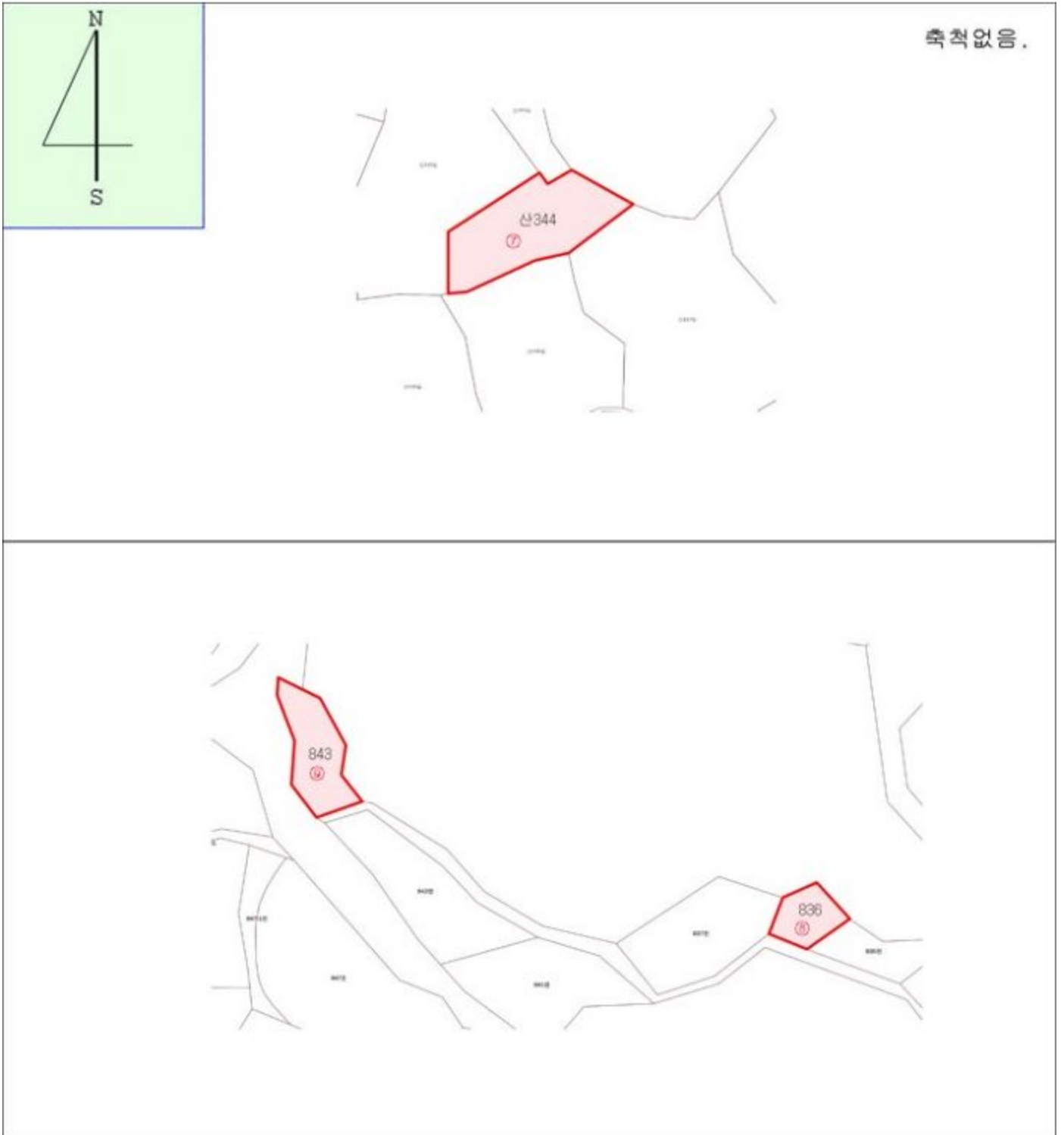
()



()



()





【 1) 】



【 1) 】



【 2) 】



【 3) 】



【 4) 】



【 4) 】



【 4) 】



【 5) 】



【 6) 】



【 6) 】



【 6) 】



【 6) 】



【 6) () 】



【 7) 】



【 8) 】



【 9) 】